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9. 3. / (총 14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서울특별시	과 장	김 정 일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전 화	02-2133-7669	
인천광역시	단 장	안 광 찬		032-440-7801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담 당 자	이 은 실		032-440-784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인사혁신처	과 장	안 석		044-201-8440	
복무과	담 당 자	박 종 복		044-201-8444	
기획재정부	과 장	이 상 영		044-215-5530	
공공정책총괄과	담 당 자	함 진 우		044-215-5514	
행정안전부	과 장	박 정 주		044-205-3961	
공기업정책과	담 당 자	김 혜 민		044-205-396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현황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 코로나19 조치사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코로나19가 교회와 체육시설, 아파트, 요양원 등 우리 주변, 너무 가까운 곳에서 자주 발생 하고 있다며, 힘들고 지치셨겠지만 다시 한 번 긴장의 끈을 조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평생친구

### 코로나19 조치사항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 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태풍 '마이삭'의 북상에 대비하여 실외 선별진료소를 점검하고, 태풍의 진행상황에 따라 진료소 운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 운영정보를 안내**하고,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실내 선별진료소를 갖춘 민간병원이나 구(區)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한다.
-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21시 이후에 편의점 야외테이블 이용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9월 6일(일) 까지 편의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편의점 내 취식 및 야외테이블 제공이 금지되고, 계산·포장 시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이와 함께 대형마트 내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9월 6일(일)까지 시식 구역(코너)를 중단하도록 권고하였다.
  - 한편,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에 대한 생활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용객이 업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해야 하며, 이용업소의 경우 고객에 대한 면도 행위가 금지된다.









평 생 친 구

- **경기도**는 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확진자 발생시설 방역 조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접촉자에 대한 능동감시 등을 통해 추가 환자 발생 등을 점검하고 있다.
- □ 관계부처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월 26일(수)부터 **교회 및 고위험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8일 차인 어제(9.2.수)는 9개 시·도, 21개 시·군·구에서 **21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위반 등 **8건을 조치**하였다.
  - \* 교회 61, 방문판매 6, 노래방 16, 유흥시설 49, 음식점 25, 학원 36, 체육 15, 공연 4, 기타 2
  - 한편, 코로나19 안전신고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한 신고와 개선의견도 수렴 중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가 다수 접수(하루 평균 15건)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 기준을 마련·배포하는 등 마스크 착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 **소방청**(청장 정문회)은 코로나19 관련 환자 등의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 1만 3900명과 의심환자 6만 6028명 등 총 8만 2145명의 이송을 지원하였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 등을 병원 및 시설로의 이송도 지원하고 있는데, 3월 19일부터 확진자 병원 이송 681건을 포함하여 총 5,136건의 이송을 진행하였다.





평생친구

## 2 공무원 및 공공기관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로 격상된 지난 1월 27일부터 공직사회에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정부의 **방역 기조**를 토대로 **공직사회**의 **특성**에 맞는 코로나19 예방조치를 담은 **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을 총 13차례 개정·시행** 하였다.
  - \* 출근, 사무실 근무, 회의·보고, 출장 등 공무원의 각 상황별 방역수칙을 수록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시행 중(8.28)
- 지난 3월 발생한 세종청사 공무원의 **코로나19 연쇄확진**을 계기로 현재까지 전 부처에 <sup>①</sup>적정비율 재택근무, <sup>②</sup>시차출퇴근, <sup>③</sup>점심시간 교차 운영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를 낮추도록 하였다.
- 아울러 **최근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등 **긴급한 방역 조치**가 공직사회에서 **적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전파**\*하고 있다.
  - \* 5.29일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 긴급 방역조치 전파
- 앞으로도 교대 **재택근무 등 복무 조치**와 **근무 중 방역수칙**들이 **공직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 **공공기관**(340개)도 중대본・인사처 등을 중심으로 **마련된 복무 관련 각종 지침**을 기관 특성에 맞게 시행 중이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sup>①</sup>유연·재택근무, <sup>②</sup>시차출퇴근제, <sup>③</sup>점심 시가 교차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를 최대한 **완화**하고,
- 기관별 특성에 맞는 대응 절차(매뉴얼) 수립 후 대응 조치 실시 및 비상대용체계 구축 등을 통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대응 지침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거리 두기를 적극 시행 중이다.
- 근로자의 근무 유연화(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보유·관리 중인 다중 이용시설 방역소독 및 휴관 등을 통해 기관 내·외 밀집도 완 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기관별 업무특성·여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주도 기관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평생친구

### 3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조치**에 따른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이동량	인구 이동 건수	S이동 통신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카드매출	소비 금액	S카드사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자료		3/1=/1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대중교통	수도권	서울시·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이용량	교통 이용	인천사경기도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 분석 결과 8월 16일(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이후 두번째로 맞이한 주말(8월 29일~8월 30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25.2%(844만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8.15.~16.) 33,484천 건 → (8.29.~30.) 25,043천 건

###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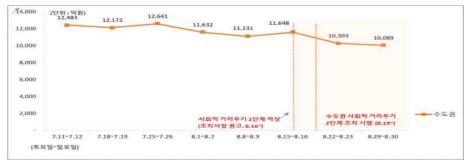
- ②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26.2%(511만 건) 감소하였다.
  - \* (8.15.~16.) 19,509천 건 → (8.29.~30.) 14,402천 건

###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 ③ 수도권 카드 매출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3.4%(1,559억 원) 감소하였다.
  - \* (8.15.~16.) 11,648억 원 → (8.29.~30.) 10,089억 원

###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드리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퇴근과 같이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평생친구

## 4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현황

- □ 정부는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치료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우선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도록 함으로써, 병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상황실 배정환자 중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1,719명(66.5%)
-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수도권에 지난 주 대비 **320개 병상을 확충**하여 9월 2일(수) 기준으로 **총 2,025병상을 확보**하였으며, 내일(9.4.금)까지 **77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원 지정 등을 통해 이번달까지 **110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최근 늘고 있는 위· 중증 환자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13개 시설, 3,179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9월 2일(목) 기준 **1,537명의 추가 입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다음 주까지 3개 시설, 1천여 명 규모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 국방부는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확보 지원을 위해 **수도병원의** 8개 병상을 중환자용 병상으로 전환하고, 군의관 및 간호인력 68명을 투입하여 9월 4일(금)부터 중환자를 치료한다.
  - 아울러 내일(9.4.금)부터 수도권의 공공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 진료소 등 총 8개 기관에 대해 22명의 군의관을 우선 파견한다.









앞으로도 추가 인력지원 등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우정공무원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코이카연수원, 고용노동연수원, 시립서남병원, 시립북부병원, 시립서북병원, 협의 중(1개 기관)

##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9월 2일(수)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6333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20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7133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737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9.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고발**할 계획이다.
  -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총 1천 명의 무단이탈자가 발생하였으며, 하루 평균 5.08명(무단이탈율 0.16%)이 적발되었다.
- □ 9월 2일(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2,674개소**, **▲** 음식점·카페 3만 9007개소 등 39개 분야 총 6만 586개소를 점검 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77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27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578반, 3,239명)하여 심야 시간 (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평생친구

-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
  - 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3.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 수도권 8.19. 0시. 수도권 외 지역 8.23. 0시(학교는 8.26일)부터 시행 수도권 식당·카페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8.30일 0시부터 시행 도서시.스터디카페.하위 지하그지 및 교수수 지하제하으 8.31일 0시브터 시해

국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 집합금지 및 교습소 집합제한은 8.31일 0시부터 시행					
구분		조치사항				
		수도권	비수도권			
집 협 모임·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다중 이용 시설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 클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카페·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 피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장 광관장 영화만 목욕탕시우나, 멀티방 DMD방, 장례식장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이상), 뷔페, PC방  O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이상일반음식점(예: 150m²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살내 결혼시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시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지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학교		* 건답들음 등 될수 시비스 규칙  ○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	O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b>원격수업 전환</b> O 이외 지역은 <b>등교 인원</b> 밀집도 조정			
기관,	공공	O <b>유연·재택근무</b> 등을 통해 근	무인원 제한			
기업	민간	O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평생친구

## 붙임2

###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사랑제일교회 장로님과 전도사님 부부가 보건소에서 확진 받고 백백원에서 재검했는데 음성판정 오늘저녁 7시에 나왔습니다

설마설마했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나오시는분들은 무조건 병원에서 재검 받으세요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틀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시대\*\*\*\*\*)





- 11 -





## 붙임3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과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워격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sup>®</sup>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김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충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다.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 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평생친구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갑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